

지방재정 손실비리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설 특정감사 결과보고

감사목적

- ◆ 민간보조 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민간 확산을 도모.

I 감사 개요

1. 감사 근거
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
-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」 제5조(감사의 범위)
- 2015년 감사 종합계획 【감사실-7411(2014.12.15)】

2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7. 6. ~ 7. 7.
- 감사대상 : ◆◆◆◆◆센터 (주관부서:사회복지과)
- 감사범위 : 2014. 2. 1. ~ 2015. 6. 30.
- 감사 중점사항
 -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
 -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및 합법성 등
- 감사반원 : 1개반 2명

1. 총 평

○ ◆◆◆◆◆센터 특정감사 실시 배경은

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(지방재정 손실 비리) 특정감사 실시 일환과 동시에 2014년도 3월에 개원하여 운영재원의 90% 이상을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
○ 이번 감사에서

- 직원 채용(호복책정) 등 센터 운영 부적정, 직원 복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부적정 사례 3건을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(시정3, 주의1), 재정상 조치(환수 773,600원/ 1건), 신분상조치(훈계 2명) 처분 요구함.

2. 지적사항 목록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내역			비고
		행정상	재정상(천원)	신분상	
1	직원채용(호복책정) 등 센터운영 부적정 ⇒ 인건비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 (시지침 준용시 직종기준 낮아져 예산절감) ⇒ ●●● 호봉 잘못 책정하여 773,600원 과다 지출 등	시정	환수 773	훈계1	개소 업무 실무자 훈계
2	직원복무 운영에 관한 사항 ⇒ 휴일행사 진행에 따른 평일 대체 휴무 실시로 2일 센터 운영 안함.	시정		훈계1	센터장 훈계 기관경고
3	식·부자재 공급 계약 부적정 ⇒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징구	시정			

1. 직원채용(호봉책정) 등 센터 운영 부적정

- 사회복지과에서는 2013.11.22 「○○○○시설 운영계획」 수립시 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의 기준을 인천시의 실정에 맞게 인천시에서 수립한 기준 (○○○사업 안내 지침)에 의거 시설장은 3급, 사업수행 인력은 4~5급에 준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어야 하나 보건복지부 사업수행 지침을 준용하여 시설장은 관장, 사업수행 인력은 3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16,337천원의 예산을 더 지출한 사실이 있다.
- 또한 개원시 이용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직원을 나누어서 채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개원 때 직원 6명을 일괄 채용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인원은 개원 때부터 4명에서 현재 14명으로 정원 20명에 크게 모자라는 형편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또한 ○○○○ 채용시 호봉이 21호봉 임에도 22호봉으로 잘못 책정하여 인건비 773,600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, 재정상 환수 773,600원, 신분상 훈계(실무자)

2. 직원복무 운영에 관한 사항

- 「◆◆◆◆◆센터 운영규정」 제39조(시간외근무)에 의하면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에 시간외

근무(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)를 명할 수 있고, 연장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- 그러나 ◆◆◆◆◆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2014.9.27.(토) 가족행사 10:30~15:30(5시간) 진행을 사유로 2014.10.10.(금)에 2014.9.27일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1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체 휴무를 실시하였으며, 2015.4.11.(토) 가족행사 13:00 ~ 17:00(4시간) 진행을 사유로 2015.5.4.(월)에는 전 직원이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다. 직원 대체휴무 실시로 인한 2일은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, 재정상 환수 773,600원, 신분상 훈계(센터장), 기관경고

3. 식·부자재 공급 계약 부적정

-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」 제21조(예산집행품의)에 의하면 직무수행경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인건비, 여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집행 시에는 사전에 예산집행품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 ◆◆◆◆◆센터에서는 2015.2.28. 식·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.
-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) 제2항에 의하면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·용역 계약시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동법시행령 제 51조(계약의 이행보증) 제5항에 의하면 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하며,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면제받은 자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(이하

“확약서”)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그러나 ◆◆◆◆◆센터에서는 2015.2.28.일 (주)○○○과 28,000,000원에 2015년 식·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계약을 체결 후 계약보증금 또는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였음.

4. 지도·감독 소홀 (사회복지과)

- 사회복지과에서는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27조(감독 등)의 규정에 의거 ◆◆◆◆◆센터 전반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원채용 등 센터 운영 부적정 외 26건의 위법, 부당사항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